

● 법무부고시 제2015 - 32호

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(F-2)의 체류자격 '차'목에 해당하는
부동산의 투자지역, 투자대상,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

「출입국관리법시행령」 별표1의 제27호 거주(F-2)의 체류자격 '차'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, 투자대상,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5년 1월 26일

법무부장관

1.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

가. 투자지역 :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·수하리 일원(알펜시아)

나. 투자대상

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'대관령 알펜시아관광단지'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나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'나'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가'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- ③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 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- ④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라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
다. 투자금액 : 5억원 이상

라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

2.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

가. 투자지역 : 인천광역시 중구, 연수구, 서구 일원 (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, 영종지구, 청라국제도시)

나. 투자대상
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,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·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, 영종지구,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나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'나'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가'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-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(제9조의3)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제3조 제18의2) 및 지식경제부 고시(제2012-323호)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
- ④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 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- ⑤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라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-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(단, '14.9.30. 현재 및 ' 15.9.30.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)

-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

- | |
|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<u>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</u>2.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<u>주택의 시공사</u>3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,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<u>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</u>4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,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신탁업자</u> |
|---|

- 임대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(F-2)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

다. 투자금액 : 7억원 이상

라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

3.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

가. 투자지역 : 제주특별자치도

나. 투자대상
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나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'나'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가'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- ③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 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- ④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라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
다. 투자금액 : 5억원 이상

라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

4. 전남 여수에 대한 적용기준

가. 투자지역 :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(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)

나. 투자대상

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한 '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'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나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'나'목)에 따른 **휴양 콘도미니엄**
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가'목)에 따른 **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**
- ③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 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**별장**
- ④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라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**관광펜션**

다. 투자금액 : 5억원 이상

라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

5.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기준

가. 투자지역

-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일원 (해운대관광리조트)
-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·연화·대변·당사·청강리 일원 (동부산관광단지)

나. 투자대상

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,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승인하여 지정한 '해운대관광특구' 중 '해운대관광리조트' 및 '동부산관광단지'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- ①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나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2호 '나'목)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
- ②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가'목)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- ③ 지방세법(제13조제5항제1호) 및 시행령(제28조), 소득세법(제104조의3 제1항제6호) 및 시행령(168조의13), 법인세법(제55조의2제2항제6호) 및 시행령(제92조의10)에 따른 별장
- ④ 건축법시행령(별표1 제15호 '라'목) 및 관광진흥법(제3조제7호)에 따른 관광펜션

다. 투자금액 :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원 이상, 동부산관광단지 5억원 이상

라. 시행기간 :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